

2026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공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14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부서(근무지)
청사A	기간제 근로자 (청사방호)	1명	일근근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방호, 경비·안전순찰, 민원응대 및 안내 등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시 아라일동)
청사B		6명	교대근무		
청사C		2명	일근근무	제주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안전순찰, 민원응대 및 안내 등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건입동)
청사D		2명	일근근무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방호, 경비·안전순찰, 민원응대 및 안내 등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 서호동)
청사E		3명	교대근무	서귀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청사방호, 경비·안전순찰, 민원응대 및 안내 등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 안덕면)

※ 채용 대상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근로기간

채용분야	지원코드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청사A, B, C, E	2026. 7. 1.(수) ~ 2027. 6. 30.(수) / 1년		
	청사D (서귀포서 일근근무)	가유형	1명	2026. 7. 1.(수) ~ 2027. 6. 30.(수) / 1년
		나유형	1명	2026. 7. 20.(월) ~ 2027. 7. 19.(월) / 1년

※ 청사D(서귀포해양경찰서 근무)의 경우 근무 시작일이 서로 상이함

- 청사D(서귀포해양경찰서 근무)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근무 시작일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 완료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선택 결과에 따라 잔여 유형은 차순위자에게 자동 배정됨*

* 청사E(서귀포해양경찰서 교대근무) 근로기간 선택 및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서 개별 사정에 따른 별도 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기 기준에 따른 근로기간 배정 결과에 대하여 별도 이의 제기를 받지 않음

다. 근로시간

채용분야	지원코드	근무일	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청사A, C, D	주 5일 (월~금, 공휴일 후무)	1일 8시간(09:00 ~ 18:00)
	청사B, E	6일 또는 3일 주기 순환 교대근무	주간 및 야간근무

※ 근무부서(기관)에 따라 교대근무 주기는 변경될 수 있음

라. 보 수

채용분야	기본급(월)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2,241,630원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7조(보수)에 따름

마.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별도 지급 등

바.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26. 6. 17.) 예정일까지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6. 17.)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보안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서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6. 1.) 기준 / 서류전형 시 적용]

항 목	내 용
관련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개월 수 × 0.5점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 근무경력은 제외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일반 또는 기계) 자격증 소지자(5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5점) * 무도 인정단체는 [붙임 3] 참조

라.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6. 1.) 기준 / 서류전형 시 적용] - 청사B 분야만 해당

항 목	내 용
법정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중복인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 최대 10%)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까지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20점), 2. 직무수행 계획서(20점)
 3. 우대요건(60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10점)
 4. 가산사항(5~10점)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점) - 청사B(제주청 교대근무) 만 해당
- *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가산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가.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면접위원 중 1인 제척·회피·기피할 경우 제척·회피·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불합격 기준

- 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①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②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은 근무기간 내에 한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가. 채용공고 : 2026. 5. 22.(금)

나. 원서접수 : 2026. 5. 22.(금) ~ 6. 1.(월) 18:00 / 10일간

다. 접수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64-801-2416)

※ <63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65,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계 채용 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서류봉투 겉면에 [별지서식 12] 부착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제출
 -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마. 세부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5. 22.(금)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나라일터 등 게시
원서접수	'26. 5. 22.(금) ~ 6. 1.(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 : 6. 1.(월)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6. 10.(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공고
면접시험	'26. 6. 17.(수)	▶ 면접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6. 6. 22.(월)	▶ 개별 통지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공고
근무시작일	'26. 7. 1.(수) '26. 7. 20.(월)	▶ 개별 통지 ▶ 개별 통지 / 청사D 나유형 해당

※ 상기 일정은 시험 실시기관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서류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2호
3.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3호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5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6호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1부	· 별지서식 7호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8호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9호
10.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10호
11.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 가 기재되도록 발급
1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1. 우대요건에 필요한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등 · 미제출 시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2. 가산요건에 필요한 증빙서류(청사B만 제출)	· 법정가점 서류 등 · 미제출 시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별지서식 11호 · 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나.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중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우대·가산요건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응시번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7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 ☎ 064-801-2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1항)】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붙임 2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근무부서
청사A·B·C·D·E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해양경찰서 / 소속시설 포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방호 업무 ○ 경비업무 지원업무 ○ 민원업무 ○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시하는 자세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지식 ○ 시설물 안전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지식 등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일반 또는 기계)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 무도 인정단체는 [붙임 3] 참조
가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가점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인정단체		
<p>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p>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p>※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p>			
<p>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p>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p>※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 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p>			
<p>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p>	<p>택견보존회</p>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청사A	
응시자격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등 채용 관련 문자가 발송되오니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청사A	
응시자격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집결시간 종료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기간제근로자 / 청사A
- ② 응시자격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사A	성명	
----------	----------	----------	-----	----	--

2.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 (○○과)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면접시 활용 예정으로 작성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필히 제출
(해당 없을시 이력서 미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청사A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청사A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u>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별지서식 제9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6. . . .

성명 : (서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서식 제11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2호>*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발송, 방문접수의 경우에도 해당양식 준용하여 제출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청사방호
성 명	
휴 대 폰	

□	□	□	□	□
---	---	---	---	---

'26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방호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5. 22.(금) ~ 6. 1.(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등기 발송증 부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65,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자 앞 ☎ (064) 801 - 2416

6	3	2	3	6
---	---	---	---	---